

새로운 경기

공정한 세상

2019년 경기도 달라지는 행정제도



III 목 차 III

1.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(일반행정 분야)	1
2.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(복지·보건·여성·교육 분야)	5
3.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(산업·경제, 농어업·축산·산림, 건설 분야)	13
4. 깨끗한 환경, 편리한 교통, 살고 싶은 우리동네 경기도(환경, 도시·교통 분야)	22
5.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(안전,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)	28

※ '18년 하반기에 既변경·시행된 제도 중, 도민 생활과 밀접하여 홍보가 필요한 사항 일부 포함

1

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(일반행정 분야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공익제보 핫라인 설치·운영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, 공직자 부패행위 제보 통합창구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익신고, 공직자 부패행위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창구 일원화 * 도 홈페이지 內 공익제보접수시스템 「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」 설치 ●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지원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한 변호사가 대리신고 하는 비 실명대리신고제 운영 - 제보자 포상제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보상금)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% 지급 · (포상금) 최대 2억원 지급 	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(‘19. 1월)	감사관 (조사담당관)
경기도의 소리 통합창구 운영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도민의 목소리를 한 곳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통합 창구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재된 접수창구(현행) → 15개 도민참여 통합창구(개선) - 창구구성 : 정책제안(일반제안, 공모제안, 국민생각함, 아이디어카페), 도민발안, 도민청원, 도민 참여(여론조사, 규제개선, 주민참여예산), 민원(민원신청, 예산낭비신고, 불량식품신고, 민생범죄신고, 기업SOS신청, 안전신고) 	경기도 자체계획 (‘19. 1월)	기획조정실 (미래전략 담당관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경기도지역개발 채권매입 한시적 감면	◦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감면 기간 : 2018.12.31.	●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감면 기간 연장 - 2019.01.01. ~ 06.30. ※ 감면대상 등 변동 없음	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(‘19. 1. 1.)	기획조정실 (예산담당관)
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	◦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종이고지서 병행 발송 - 스마트고지서 송달효력 부재로 종이고지서 병행 발송 - 송달효력 확보를 위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 건의	●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전자고지 송달효력 발생 - ‘19년 1월부터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고지서만 발송 * 스마트고지서 신청자에 한함 - 모바일 송달에 따른 전자고지 세액공제 적용 가능	지방세기본법 제2조 (‘19. 1. 1.)	자치행정국 (세정과)
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	〈신 규〉	● 신혼부부(혼인신고 5년 이내)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신설 - 대상 :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(홀벌이 5천만원)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* * 취득가액 3억원(수도권 4억원) 이하,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 - 내용 : 취득세 50% 감면(일몰기한 : ‘19.12.31.)	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(‘19. 1. 1.)	자치행정국 (세정과)
주한미군기지 한국인근로자 평택이주 취득세 감면	〈신 규〉	● 주한미군기지 한국인근로자 평택이주 감면 신설 - 대상 : 주한미군기지 이전(평택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)으로 이주하는 한국인근로자가 취득하는 평택시 거주목적 1가구 1주택 - 내용 :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.5%~100%* 감면(일몰 기한 : ‘21.12.31.) * 85㎡ 이하 : 100%, 85㎡~102㎡ : 75%, 102㎡~135㎡ : 62.5%	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(‘19. 1. 1.)	자치행정국 (세정과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지방세 증가산금 비율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증가산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증가산금 비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“1만분의 75”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	지방세징수법 제31조제1항 (’19. 1. 1.)	자치행정국 (조세정의과)
독촉기한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: 발급일부터 10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: 발급일부터 20일 	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3항 (’19. 1. 1.)	자치행정국 (조세정의과)
신용카드납부 제한 폐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방세체납자 신용카드 납부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세 3건이상, 체납액 1백만원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삭제 	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0조제3항 (’19. 1. 1.)	자치행정국 (조세정의과)
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규정 추가	<p>〈신 규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 	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제2항 (’19. 1. 1.)	자치행정국 (조세정의과)
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일반재산에 한정 미취업자들의 공동 창업활용 공간 수의계약 허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미취업 청년 창업활용 공간 지원 및 대부료 감경조항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정 · 일반재산에 대해 미취업청년 등에게 창업활용 공간 수의계약 허용 -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<u>50%범위</u>에서 사용 · <u>대부료 감경</u> 가능 	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(’19. 6. 4.)	자치행정국 (재산관리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<p>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기간 인정 확대</p>	<p>◦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- 첫째아동 1년이상 육아휴직시 1년만 경력인정</p>	<p>•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확대 - 부부 모두가 첫째자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1년 이상에 대한 육아휴직 경력인정(최대3년 限) ※ 배우자가 민간근로자인 경우도 해당</p>	<p>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 (‘18.12.24.)</p>	<p>자치행정국 (인사과)</p>

2 |||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(복지·보건·여성·교육 분야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긴급복지지원법	◦ 위기상황 사유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에 “자연재해” 및 “휴업·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지거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” 등을 추가 	긴급복지지원법 개정·공포(‘18.12.11.) 후 6개월	보건복지국 (복지정책과)
	◦ 재산 요건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재산 기준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도시 : 135백만원 → 188백만원 - 중소도시 : 85백만원 → 118백만원 - 농어촌 : 72.5백만원 → 101백만원 	긴급복지지원법 (‘19.1.1.)	보건복지국 (복지정책과)
맞춤형급여	◦ 기준 중위소득 (1인가구1,672,105원,4인가구4,519,202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준 중위소득 (1인가구 1,707,008 원, 4인가구 4,613,536 원) 	보건복지부고시 제2018-144호 (‘18. 7.24.)	보건복지국 (복지정책과)
	◦ 생계급여 선정기준 (1인가구501,632원,4인가구1,355,761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계급여 선정기준(1인가구 512,102 원, 4인가구 1,384,061 원) 		
	◦ 의료급여 선정기준 (1인가구668,842원,4인가구1,807,681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료급여 선정기준(1인가구 682,803 원, 4인가구1,845,414 원) 		
자활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자활참여자 급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로유지형 : 23,810원/일 - 사회서비스·시설도우미형 : 34,890원/일 - 복지도우미·시장진입형 : 38,910원/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활참여자 급여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로유지형 : 23,810원/일 → 23,968원/일 - 사회서비스·시설도우미형 : 34,890원/일 → 42,782원/일 - 복지도우미·시장진입형 : 38,910원/일 → 49,437원/일 	‘19.1월부터 적용 시행(예정)	보건복지국 (복지정책과)
참전명예수당	◦ 참전명예수당 年 12만원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6·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年 12만원 → 年 15만원 (3만원 ↑) 	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	보건복지국 (복지정책과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<p>애국지사 「경기광복 유공연금」 지원</p>	<p>〈신 규〉 (‘18. 하반기 기 시행중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예우 및 자금심 고취를 위해 도내 거주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 예우금 지원 - 지원 액 : 1인당 매월 100만원씩 - 지원시기 : 매월 25일 (*18.12월부터 시행) 	<p>경기도 자체계획 복지정책과-22858호 (‘18. 9. 12.)</p>	<p>보건복지국 (복지정책과)</p>
<p>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 등 지원</p>	<p>〈신 규〉 (‘18. 하반기 기 시행중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기도내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함 - 지원내용 : 도내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해 특별위로금 및 수당, 명절위로금 지급 · 특별위로금 : 생애 1회(의사자 30백만원, 의상자 1백만원 ~ 15백만원) · 수당 : 등급별 4만원~10만원, · 명절위로금 : 회당 10만원 - 지원시기 : 매월 25일 (*18.10월부터 시행) 	<p>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복지정책과-23447호 (‘18. 9.18.)</p>	<p>보건복지국 (복지정책과)</p>
<p>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</p>	<p>〈신 규〉 (‘18. 하반기 기 시행중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지자체 차원의 현실적인 보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사고 발생 청년과 가족의 심리적·육체적·경제적 어려움 극복 - 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 청년 중 군복무 중인 자 · 현역군인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(해양경찰 포함), 의무 소방대원 등 - 지원내용 : 연 105,295명 / 1인당 연간 약 41천원 - 지원절차 :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 시 상해 보험 자동 가입(전역 시까지 1년 단위로 보험보장 기간 자동 연장) 	<p>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(청년의 생활안정)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</p>	<p>보건복지국 (청년복지정책과)</p>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(청년배당)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,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- 지원대상 : 만 24세 청년(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) - 지원내용 : 1인 당 연 100만원(분기별 25만원) 	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(‘18.11.13.)	보건복지국 (청년복지정책과)
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년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- 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 만18세 청년/‘19년(157,483명) - 지원내용 :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원(임의가입자 월 최저보험료) 지원 	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(개별 조례 제정 추진 중)	보건복지국 (청년복지정책과)
기초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준연금액 - 소득하위 70% 이하 어르신 25만원/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준연금액 - 소득하위 20% 이하 어르신 30만원/월 - 소득하위 20% 초과 ~ 70% 이하 어르신 25만원/월 	기초연금법 제5조 (‘19. 4. 1.)	보건복지국 (노인복지과)
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- 건강보험료 금액의 7.38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- 건강보험료 금액의 8.51% 	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(‘19. 1. 1.)	보건복지국 (노인복지과)
노인일자리 신규유형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익활동, 시장형,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(신설) - 월 60~66시간 / 월 54~59.4만원 지원 - 아동·청소년·장애인·취약가정·노인시설 지원 	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(‘19. 1. 1.)	보건복지국 (노인복지과)
장애인등록사항 변경(장애인등급제 폐지 → 장애 정도로 변경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의학적 심사 후 장애등급(1~6급) 결정, 등급에 따른 서비스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으로 ‘장애 등급’ 용어가 ‘장애 정도’로 변경 -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현행 제1급~제3급)’ 및 ‘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제4급~ 제6급)’으로 구분 - 서비스 지원은 등급에 따른 지원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후 지원 ※ 기존 대상자는 별도 장애정도 판정, 조사 불필요 	장애인복지법 제32조 (‘19. 7. 1.)	보건복지국 (장애인복지과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종일 돌봄이 필요한 성인기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- 지원내용 : 주 20시간(월 88시간) 이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제공 - 지원시기 : '19. 3월(예정) 	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-4861 (‘18. 9.13.)	보건복지국 (장애인복지과)
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일반 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기 발달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지원 - 지원내용 : 일일 2시간 이내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제공 - 지원시기 : '19. 7월(예정) 	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-4861 (‘18. 9.13.)	보건복지국 (장애인복지과)
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 교육 프로그램 지원 - 지원내용 : 영유아기, 성인전환기, 성인권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- 수행기관 선정 : '19.1월(예정) - 지원시기 : '19. 3월(예정) 	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-4861 (‘18. 9.13.)	보건복지국 (장애인복지과)
장애인자립전환 지원단 운영 지원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경기도 장애인 자립전환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- 조직 : 4명 *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내 자립전환TF팀 - 기능 : 자립욕구조사, 자립전환서비스 상담, 자립생활 주택 입·퇴소기준 마련 등 - 주요사업 : 자립 전 사전교육, 자립생활주택 운영, 자립 정보 제공 등 - 지원시기 : '19. 1월(예정) 	경기도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제20조 (‘18. 1.11.)	보건복지국 (장애인복지과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임신부 지원 확대	◦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 - 생후 6개월~만12세 이하 - 만65세 이상	● 2019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임신부 대상 지원 확대 - (기존대상) 변동없음 - (추가) 임신부	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-3950호('18.12.12.)	보건복지국 (감염병관리과)
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	<신 규>	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- 지원대상 : '19년 신생아로 1년 이상 도내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(소득수준 무관) -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(산후조리비, 모유수유용품, 산모·신생아용품, 산모 건강관리비 등) - 시 행 : '19.1월부터(예정)	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('18.11.13.)	보건복지국 (건강증진과)
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	<신 규>	● 지원대상 : 2019년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 ● 수행기관 : 도내 치과 병·의원 ● 지원내용 : 구강검진(문진, 기본 구강검사, 플라그 등 위생검사), 구강교육(구강위생관리, 바른 식습관, 불소 이용법), 예방 진료 등	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('18.10. 1.)	보건복지국 (건강증진과)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수수료 변경	◦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- 시험·검사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아 유사항목의 수수료 적용	● 시험·검사법 개정·신설에 따른 신규 시험·검사 항목의 수수료 신설 ●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·규격 통합됨에 따른 수수료 체계 개선 ● 현행 원가산출 근거를 반영하여 시험·검사 수수료 현실화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-100호 ('19. 7. 1.)	보건환경연구원 (식품의약품 연구부)
고령친화식품 정의 신설	<신 규>	● 고령친화식품의 정의 신설 - 사회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에게 적합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식품의 개념마련 -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이 유통되어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기회 보장	식약처 고시 제2018-98호 ('19. 1. 1.)	보건환경연구원 (식품의약품 연구부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도시락 위생관리 기준 신설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시락의 제조 가공기준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될 수 있도록 제조·가공기준 신설 도시락에 사용되는 야채류의 세척기준, 냉동수산물의 해동 기준 등 신설 	식약처 고시 제2018-98호 (‘19. 6. 1.)	보건환경연구원 (식품의약품 연구부)
PLS (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)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16. 2월말부터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에 대해 PLS 우선 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19. 1. 1. 모든 농산물의 PLS(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) 전면 시행에 따른 기준 강화 * PLS : 농산물별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경우 일괄적으로 0.01 ppm을 적용하여 현재보다 기준이 강화되는 제도(Positive List System) 	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-106호	보건환경연구원 (농수산물검사부)
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대상 : 도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(정액) 진료비 월 30만원(신청시) 사망조의금 100만원(1명당) ※ 국비 : 월 130여 만원(정액) ⇒ 1인당 지급총액(정액, 국비+도비) : 200여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대상 : 도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(정액) 건강관리비 월 30만원(정액) 위로금 월 60만원(정액) 사망조의금 100만원(1명당) 지원시기 : 2019년 1월 ※ 국비 : 월 140여 만원(정액) ⇒ 1인당 지급총액(정액, 국비+도비) : 300여만원 	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 (‘19. 1. 1.)	여성가족국 (여성정책과)
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동지원연령 만 14세미만 월 13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액 및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동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월 20만원 * ‘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: 여가부 가족지원과-3374(‘18.9.13)호 	여성가족부 고시 (‘19. 1월 예정)	여성가족국 (가족다문화과)
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월 18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액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월 35만원 * ‘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: 여가부 가족지원과-3374(‘18.9.13)호 	여성가족부 고시 (‘19. 1월 예정)	여성가족국 (가족다문화과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어린이집 평가인증	◦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- 어린이집 신청에 따라 실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-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 · 의무화 	영유아보육법 제30조 (‘19. 6. 예정)	여성가족국 (보육정책과)
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용 보호장구 지원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대상 : 도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4,813개소 6,180대 • 지원내용 : 유아용 보호장구 개당 7만원 지원 	영유아보육법 제36조 (비용의 보조)	여성가족국 (보육정책과)
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 (위생용품지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신청기관) 읍·면·동 주민센터 ◦ (지급대상) 중위소득 50%이하, 한부모 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11세~18세 여성청소년 ◦ (지원내용) 위생용품 구매비용 년12만원이내 ◦ (지급방법) 직접 또는 택배 수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방식 변경 - 신청기관, 지급대상, 지원내용 : 좌동 - 지급방법 : ‘국민행복카드’를 이용한 전자바우처 지급 ·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온·오프라인 유통점(이마트, 롯데마트 등)에서 직접 구입 	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	여성가족국 (아동청소년과)
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·교통비 지원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- 지원대상 :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청소년 - 지원액 : 1만원 한도내(1인/1일/1식) - 지원방식 : 음식점, 도시락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(2019. 2월부터) •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- 지원대상 :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- 지원액 : 월 3만원(1인) - 지원방식 : 교통카드 충전(2019. 2월부터) 	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	여성가족국 (아동청소년과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범기간 : 2019. 4월 ~ 12월(2020년부터 본 사업 수행) 지급대상 : 보호 종료 아동* 중 보호 종료 후 2년 이내 만 18세~24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를 보호종료 직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아동 지급금액 : 1인당 월 30만원 지급방식 : 현금 지급(계좌 이체) 원칙 신청방법 : 사전신청(시설·공동생활가정·가정위탁지원센터) 및 직접신청(읍면동) 	사업지침 확정 (‘19년 2월)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(‘19년 중)	여성가족국 (아동청소년과)
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학생 및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게 학자금·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‘18년 하반기부터 소득제한 폐지 및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지원기간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·생활비 대출이자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, 대학원생 구별 없이 학자금·생활비 이자 지원 	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(‘19. 1. 1.)	평생교육국 (교육협력과)
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대상 :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고등학교는 조례개정 필요 - 교복입는 학교로 입학하는 학생, 관외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생 * 학생수 : 127천명(중1) 지원방법 : 현물지원(학교주관구매제도) 지원단가 : 30만원(1인당) 사 업 비 : 383억원(도 96억<25%>, 시군 96억<25%>, 교육청 191억<50%>) 	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(‘18.10월)	평생교육국 (교육협력과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신설 운영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기/장소 : 2019. 2월 개소(예정) / 경기도 북부청사(별관) • 센터역할 : 노무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, 노동권 교육, 정책 연구 등 노동권 보호 통합서비스 지원 • 근무인원 : 10명(센터장 1, 직원 9명) • 운영분야 : 노무법률상담· 산재보상지원· 노동권교육· 정책 연구제안 • 운영방법 : 道 직접 운영 	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제12조 (‘16.12.16.)	경제노동실 (노동정책과)
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요건 - 자본금 3억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요건 강화 - 자본금 15억원 	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(‘19. 1. 25.)	경제노동실 (공정소비자과)
가맹·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사실 확인, 조정안 마련 및 분쟁 사건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사실확인) 현장방문조사, 관련자료 제출요구,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- (협의회조정) 공익대표 3인, 가맹본부(공급업자) 대표 3인, 가맹점 사업자(대리점 이익) 대표 3인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조정 * 협의회 조정 조서 효력 : ‘재판상 화해’의 효력 부여 	대리점법 제14조 및 가맹사업법 제17조 (‘19. 1. 1.)	경제노동실 (공정소비자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소상공인 매출증대,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추진방향 : 시·군 발행 및 해당 지역 내 사용(카드, 지류, 모바일 등 형태) - 발행범위 : 일반발행 + 정책발행(청년배당, 산후조리비) ※ 기발행 4개소(성남,안양,시흥,가평) / '19년 발행 27개소 ● 이용방법 및 혜택 (http://www.gg.go.kr/gg_localcurrency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비자이용 : 지정구매처에서 할인구매(최대 6%), 소득공제(30%) 가능 ※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- 가맹점등록 : 사업자등록지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업소(조례 등 규정) * 카드형 : 요건충족시 자동등록 지류 및 모바일 : 가맹점등록 필요 ※ 백화점, 쇼핑센터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 및 연매출액 10억원 초과 상점 등은 가맹점 제외. 단, 전통시장은 연매출액 관계없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대상임 	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('18.11.13.)	경제노동실 (소상공인과)
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경기도 거주자 대상 저금리(연 2%대) 100만원이내 긴급 생활자금 대출 지원 	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	경제노동실 (소상공인과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대상 : '19. 1. 1. 이후 가입한 도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예상) 도내 33,000여 명 소상공인 지원내용 : 도내 영세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2개월 동안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/월 장려금 추가 적립 ※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, 12회(12만원) 지원 	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('18. 3. 20.)	경제노동실 (소상공인과)
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폐지	◦ 업종별 투자금액에 따라 5년 또는 7년간 법인세·관세·지방세 등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투기업에 한정한 세제 우대를 폐지, 투자유치 지원제도 3대 원칙에* 따라 개편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외 기업 동일지원에 따라, 외투기업 대상 종전 업종에 따라 5~7년(비율에 따라 50~100%) 감면되던 법인·소득세 감면폐지 (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 국내 재투자는 외국인 투자로 인정) <p><small>*국내외 기업 동일지원, 고용창출·신산업 중심지원, 비수도권·낙후지역 중심의 지역균형 발전</small></p>	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, 제9조 ('19년 1분기 개정예정)	경제노동실 (투자진흥과)
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	◦ 신청자격 : 농촌지역 거주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전업적 여성농업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자격 : 농촌지역 거주 만 20세 이상 전업적 여성농업인 (연령 상한 폐지) 	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 ('19. 1. 1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
농가도우미 지원사업	◦ 지급단가 : 도우미 1일 기준 단가 5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급단가 : 도우미 1일 기준단가 66,800원(↑ 16,800원) 	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 ('19. 1. 1.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시사용 허가 가능 행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, 물건적치, 매설 토석과 광물의 채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시사용 허가 가능행위 확대(추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농지법」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가 가능한 행위로 ‘태양광 설비를 얹해농지에 설치하는 경우’ 추가 	농지법 제36조 (‘19. 7. 예정)	농정해양국 (농업정책과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기 농업자재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: 유기·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농업인 및 농업법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대상자 : 의무자조금 납부자 우선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: 유기·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’18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 우선 지원 	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(‘18.10.11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기질비료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단가(포/20kg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기질비료 : 국비(800원 ~ 1,300원), 지방비(600원) 부숙유기질비료 : 국비(특등급 1,100원, 1등급 1,000원, 2등급 800원), 지방비(600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단가(포/20kg) : 유기질비료의 국비 지원단가 200원 감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기질비료 : 국비(800원 ~ 1,100원), 지방비(600원) 부숙유기질비료 : 국비(특등급 1,100원 1등급 1,000원, 2등급 800원), 지방비(600원) 	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자격 : 쌀산업종합발전계획(시·군단위)을 수립·선정된 지역 지원비율(%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국비</th> <th>지방비</th> <th>자부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공시설현대화</td> <td>30</td> <td>30</td> <td>40</td> </tr> <tr> <td>벼 건조저장시설(통합RPC)</td> <td>50</td> <td>10</td> <td>40</td> </tr> <tr> <td>벼 건조저장시설(일반RPC)</td> <td>30</td> <td>10</td> <td>6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	구 분	국비	지방비	자부담	가공시설현대화	30	30	40	벼 건조저장시설(통합RPC)	50	10	40	벼 건조저장시설(일반RPC)	30	10	6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자격 :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(시·군단위)을 수립·선정된 지역 지원비율(%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국비</th> <th>지방비</th> <th>자부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공시설현대화</td> <td>40</td> <td>20</td> <td>40</td> </tr> <tr> <td>벼 건조저장시설(통합RPC)</td> <td>40</td> <td>20</td> <td>40</td> </tr> <tr> <td>벼 건조저장시설(일반RPC)</td> <td>30</td> <td>20</td> <td>5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	구 분	국비	지방비	자부담	가공시설현대화	40	20	40	벼 건조저장시설(통합RPC)	40	20	40	벼 건조저장시설(일반RPC)	30	20	50	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시행지침 (‘19. 1월 예정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구 분	국비	지방비	자부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공시설현대화	30	30	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벼 건조저장시설(통합RPC)	50	10	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벼 건조저장시설(일반RPC)	30	10	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국비	지방비	자부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공시설현대화	40	20	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벼 건조저장시설(통합RPC)	40	20	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벼 건조저장시설(일반RPC)	30	20	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들녘경영체육성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업명 : 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 ◦ 내역사업별 지원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교육·컨설팅)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사업 대상자 - (시설·장비) 교육·컨설팅 지원 1회 이상 - (사업다각화) 교육·컨설팅 지원 1회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업명 : 식량작물공동(들녘)경영체육성지원사업 ● (신설)지원자격 : 식량산업융합발전계획(시·군단위)을 수립·선정된 지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경과규정) : 시설·장비는 '20년, 교육·컨설팅은 '21년부터 적용 ● 내역사업별 지원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교육·컨설팅) 운영실적 1년 이상인 (예비) 공동농업경영체 - (시설·장비) 교육·컨설팅 지원 2회 이상 - (사업다각화) 교육·컨설팅 지원 3회 이상 	식량산업작물공동(들녘)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('19. 1월 예정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보조비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비 50%, 지방비 30, 자부담 20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보조비율 : 농가 자부담 비율 경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비 50%, 지방비 40, 자부담 10 - 농가 자부담 비율 완화로 자연재해 사전 예방 	경기도농작물재해보험지원 조례 신규제정(18.12.) ('19. 1월 예정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경기도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원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1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원생 39천명 ◦ 보조비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비 30%, 시군비 7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지원대상 : 도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1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및 도내 모든 어린이집 원생 37만 여 명 ● 보조비율 : 도비 지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비 50%, 시군비 50% 	경기도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3조 ('19. 3. 1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화훼소비 활성화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업추진 기관 : 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화훼정원 조성사업 지원대상 : 초등학교 ◦ 보조비율 : 도비 10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업추진 기관 : 도, 시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화훼정원 조성사업 지원대상 확대 : 초등학교, 어린이집 ● 보조비율 : 시군비 매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비 30%, 시군비 70% 	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 특별법 ('19. 1. 1.)	농정해양국 (친환경농업과)
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 상) 도서 거주 어업인 - (지급액) 어가당 연 6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 상) 변동없음 - (지급액) 어가당 연 65만원 (5만원 증) * 국정과제/ '20년까지 연 70만원 증액 추진 	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('19. 1. 1.)	농정해양국 (수산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귀어귀촌 홈스테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귀어귀촌 홈스테이 이용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 상) 귀어를 희망하거나 관심있는 도시민 - (이용료) 1일 5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귀어귀촌 홈스테이 이용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 상) 변동없음 - (이용료) <u>1일 10만원</u> (5만원 증) * 해수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, 요금 현실화 반영 	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(‘19. 1. 1.)	농정해양국 (수산과)
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법처분(징역형) 포상금 100~200만원 - 행정처분 포상금 1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고시명 및 포상금액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시명 : <u>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</u> - 사법처분(징역형) <u>포상금 200~300만원</u> - 행정처분 <u>포상금 10~50만원</u> 	해양수산부 공고 (‘19. 1. 1.)	농정해양국 (수산과)
상속에 따른 어선 변경등록 기간 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상속으로 인한 어선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변경 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상속으로 인한 어선 변경등록 경우, 장례 및 재산상속 협의기간 고려하여 기간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</u> 	어선법 시행규칙 (‘18. 5. 1.)	농정해양국 (수산과)
어선 안전관련 처벌기준 강화 (차수별 금액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어선 안전관련 기준 위반 과태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어선 안전관련 처벌기준 강화(과태료 차수별 금액) 	어선법 시행령 제19조 (‘18. 4.24.)	농정해양국 (수산과)
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기준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3천만원(사업비) 이상 발주하는 경우 자가시공 제한 ◦ 3천만원(사업비) 미만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5천만원(사업비) 초과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시공 제한 ● 5천만원(사업비) 이하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	농림사업시행지침 (‘19. 1. 1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액비살포실적 기준 변경	◦ 액비 살포지 200ha이상 확보, 100ha이상 살포실적(재활용신고 필증 기준) 보유	● 액비 살포지 200ha이상 확보(재활용 신고필증 기준), 100ha이상 살포 실적(AgriX 기준) 보유	농림사업시행지침 (‘19. 1. 1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액비화 부속도 기준 적용대상 확대	◦ 액비화 부속도 기준 적용 대상 :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자,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 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	● 액비화 부속도(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) 기준 적용대상 확대 -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자까지 적용대상 확대	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(‘19. 3.25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식육가공업의 HACCP 적용 의무화 시행	◦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 작업장 : 도축업, 집유업, 총리령 으로 정하는 축산물가공업(알 가공업, 유가공업) 및 식용란선별 포장업	●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작업장 중 총리령이 정하는 축산물 가공업에 식육가공업을 포함하여 단계별 적용 시행 1.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(‘18.12.1.부터) 2. 2016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영업소(‘20.12.1.부터) 3.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영업소(‘22.12.1.부터) 4. 그 외 영업소(‘24.12.1.부터)	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시행규칙 제7조제2항 (‘18.12. 1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달걀의 세척 및 보존·유통기준, 표시기준	◦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(0~ 15℃)에, 알가공품은 10℃ 이하 (다만, 액란제품은 5℃ 이하)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·유통하여야 한다. ※ 다만, 건조, 당장, 염장 등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가공된 제품은 냉장 또는 냉동하지 않을 수 있다.	<추가> ● 냉장보관중인 달걀은 냉장으로 보관, 유통하여야 한다. ● 달걀을 세척하는 경우 30℃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℃ 이상의 깨끗한 물(100~20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 함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살균효력이 있는 방법)로 세척하여야 하고, 세척한 달걀은 냉장으로 보존·유통하여야 한다.	식품공전 제2. 공통기준 및 규격 4.보존 및 유통기준 (‘19. 1. 1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	◦ 달걀 껍데기의 표시 사항 - 생산자고유번호(5자리) - 사육환경번호(1자리)	<추가> ● 산란일(4자리) 표시	축산물의 표시기준 제9조 (‘19. 2.23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산지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관련	◦ 태양광 설치목적 산지는 산지 전용허가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산지일시사용 허가로 처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균경사도 15도 이하인 경우 -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등 	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 ('18.12. 4.)	축산산림국 (산림과)
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타당성검토 의무화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억원 이상의 개별처리시설, 공동자원화 개보수,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에 대해 세부사업계획 수립 후 축산환경 관리원의 타당성 검토 의견을 받아야 함 	농림사업시행지침 ('19. 1. 1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공동자원화시설 약취관리 강화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동자원화 신규 및 개보수 사업 대상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약취측정·장비사업 의무 참여 	농림사업시행지침 ('19. 1. 1.)	축산산림국 (축산정책과)
가금농가 CCTV 설치 의무화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닭, 오리농장 등의 출입구와 농장 내 동별 출입구에 CCTV설치 의무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설치대상 : 50㎡ 초과 닭, 오리농장 및 부화장 - 1회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(2회 200만원, 3회 500만원) 	가축전염병예방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('19. 7. 1.)	축산산림국 (동물방역위생과)
건설공사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지급	◦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,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- 지연지급에 대한 금전상의 제재규정 부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급인이 지급기한(15일)을 초과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이내에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 -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제작납품업자 대금도 이자 지급 기준 준용 	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8항 ('18.12.18.공포, '19.6.19.시행)	건설국 (건설정책과)
공공공사 발주자 공사대금 직불 (전자조달시스템 등) 의무화	◦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공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 	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('18.12.18.공포, '19.6.19.시행)	건설국 (건설정책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‘현장별 보증’ 제도로 개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 -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그 보증서 사본을 교부 	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(‘18.12.18.공포, ’19.6.19.시행)	건설국 (건설정책과)
불법하도급 처벌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불법 하도급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 적발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말소 처분 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호 (‘18.12.18.공포, ’19.6.19.시행)	건설국 (건설정책과)

4

깨끗한 환경, 편리한 교통, 살고 싶은 우리동네 경기도 (환경, 도시·교통 분야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국(민간) 확대시행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“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”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동차 : 5등급차량 운행제한(과태료 10만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량 등급 구분 (http://emissiongrade.mecar.or.kr) 사업장 : 가동시간 최소화 또는 가동률 10%이상 감축 조정(과태료 200만원) 공사장 :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및 공사시간 단축·조정(과태료 1차 100만원, 2·3차 : 200만원) 	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, 제30조 ('19. 2.15.)	환경국 (미세먼지 대책과)
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금지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단속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) 충전구역 내, 또는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,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벌칙 : 1회 10만원 과태료 	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 ('19. 3.21.)	환경국 (미세먼지 대책과)
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내 중소기업으로 기술능력이 없는 대기 4~5종 사업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방지시설 관리지원 : 포집시설 등 방지시설 주기적 관리 및 교육 ※ 사업장당 6백만원 지원(자부담 없음) 방지시설 유지보수 : 소모품 청소, 시설 수리(활성탄·충전물·여재, 후드·덕트 등) ※ 사업장당 10백만원 지원(자부담 20%) 	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,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제6조 ('19. 1. 1.)	환경국 (환경안전 관리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대기오염 측정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(97개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대기측정망 84개소 - 도로변측정망 7개소 - 중금속측정망 4개소 - 성분측정소 운영(2개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측정망 확대 운영 (97개소 → 118개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대기측정소 확대(84개소 → 97개소) - 도로변측정소 확대(7개소 → 10개소) - 중금속 측정망 확대(4개소 → 7개소) - 성분측정소 확대 운영(2개소 → 4개소) 	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('16~'20)	보건환경연구원 (대기연구부)
소각장 다이옥신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.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후 배출기준초과 시 사용중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 할 때까지 시설운영을 중지시켜 배출시설 관리 강화 ●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명령 	잔류성유기물질법 제16조 ('18.12.13.)	보건환경연구원 (대기연구부)
토양오염도 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토양오염 우려기준 검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카드뮴, 비소 등 21항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검사항목 확대(21항목 → 22항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추가 항목 :1,2-디클로로에탄 	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('19. 1. 1.)	보건환경연구원 (대기연구부)
실내공기질 미세먼지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민감계층이용시설(4개 시설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M10 : 100(유지기준) - PM2.5 : 75(권고기준) ◦ 일반시설(16개 시설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M10 : 150(유지기준) ◦ PM10 시료채취시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6시간 이상'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민감계층이용시설(4개 시설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M10($\mu\text{g}/\text{m}^3$) : 100 → 75 강화 - PM2.5($\mu\text{g}/\text{m}^3$) : 70(권고) → 35(유지) 강화 ● 일반시설(16개 시설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M10($\mu\text{g}/\text{m}^3$) : 150 → 100 강화 ● PM10 시료채취시간 증가 : 측정신뢰도 향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6시간 이상' → '24시간 이상' 	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('19. 7. 1.예정)	보건환경연구원 (대기연구부)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규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관리 항목 기준 신설(일반시설 16개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M2.5($\mu\text{g}/\text{m}^3$) : 신설 50 (유지기준) 	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5 및 시행규칙 제3조 일부개정 ('18. 6.27.입법예고, '19. 7. 1.시행예정)	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실내공기질 검사 항목별 기준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폼알데하이드($\mu\text{g}/\text{m}^3$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감시설 100(유지기준) ◦ 이산화질소(ppm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시설 0.05(권고기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폼알데하이드($\mu\text{g}/\text{m}^3$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감시설 100 → 80 강화 • 이산화질소(ppm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시설 0.05 → 0.1 완화 	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(‘19. 7. 1.예정)	보건환경연구원 (대기연구부)
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아파트내 물놀이 수경시설 관련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제61조의2(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·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<u>5종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61조의2(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·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<u>5종 => 8종으로 3종 확대 추가</u> • (추가)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• (추가)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• (추가)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	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(‘19. 10. 17.)	수자원본부 (수질정책과)
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 공사 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전 대상을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확대 -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기초공사 시 철근배근을 완료하는 경우 등 공사 단계에 다다른 때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함 	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(‘18.12. 4.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절차 간소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서류 제출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전 대상을 200제곱미터 이상 이외 2층 이상 이거나 높이 13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도 구조안전확인 서류 제출 제외하도록 함 	건축법 시행령 제32조 (‘18.12. 4.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의무화	◦ 종전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은 6층이상, 특수구조, 다중이용, 준다중이용 건축물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전 대상을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로 확대하여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하여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도록 함 	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('18.12. 4.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연면적 합계 5백㎡이상인 道 발주 신축 공공건축물은 녹색 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아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녹색건축인증 우수(그린2등급) 등급 이상,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1등급 이상 - 신·재생에너지 30% 이상 공급 ● 친환경기술 중 하나 이상 도입하여 설계 반영(신·재생에너지 시설, 물 순환 설비, 자원순환 시설, 생태환경 조성 등) ● 발주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 친환경기술 도입 계획에 대해 「경기도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」 심의를 받아야 함 	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제22조 ('19. 1.12. 시행예정)	도시주택실 (건축디자인과)
경기부동산포털 개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PC 웹 : 부동산종합정보, 실거래 통합조회, 건축물내진지도 등 84종 콘텐츠 ◦ 모바일앱 : 지도서비스, 일필지 종합정보 등 35종 콘텐츠 ◦ 태블릿 : 지도서비스, 실거래 통합조회 등 10종 콘텐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PC 웹서비스와 동일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동산종합정보, 실거래가 통합조회, 건축물내진지도 등 84종 콘텐츠 서비스 ● 빠른 검색을 위해 지번 + 명칭 등 통합 검색 기능 추가 	경기도부동산포털 시스템 운영규칙 제7조 (시스템의 개선)	도시주택실 (토지정보과)
승용차 등록번호 체계 개편 및 디자인 도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현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(7자리) ex)12가3456 ◦ 현 승용차 번호판 재질 및 외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페인트 제작, 별도 디자인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승용차(자가용, 렌터카) 등록번호 체계 개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록번호 자릿수 변경(7자리 → 8자리) ex)123가4567 ●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 (예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반사필름 재질 적용, 국가상징문양, 홀로그램 등 적용 	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('19. 9. 1.)	교통국 (교통정책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맞춤형버스 운행사업 확대	◦ 맞춤형버스 운행 - 15개 시·군 26개 노선 (파주, 김포, 포천, 시흥, 가평, 연천, 수원, 군포, 화성, 광명, 고양, 과천, 동두천, 양주, 부천 운행 중)	● 맞춤형 버스 운행사업 확대 - 4개시·군 4개노선 추가 (파주, 양주, 동두천, 연천 각 1개 노선)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2항1호 (‘19년 3월 예정)	교통국 (공공버스과)
경기복지택시	◦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지역에서 운행	● 운행 지역 확대 - 농어촌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지역 -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 하다고 인정되는 지역	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나목 (‘18.12.27.)	교통국 (택시정책과)
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	〈신 규〉	●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시행 -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발급대행자는 발급수수료 산출, 시·군 에서 적정여부 검증 - 재무제표 등 객관적 회계자료를 토대로 발급수수료 산정 의무화	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2항 (‘17. 4.12.)	교통국 (교통정책과)
주차환경개선사업 (자투리주차장 조성)	〈신 규〉	● 구도심 주거밀집지역 노후주택, 유희지 등 매입 자투리 주차장 조성 지원 - 30개소 1,020백만원 도비지원 ※ 설치비 전액지원	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(‘18. 7.17)	교통국 (교통정책과)
주차환경개선사업 (무료개방 주차장 지원)	〈신 규〉	● 학교, 종교시설 등 민간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개방 시 설치비 지원 - 15개소 750백만원 도비지원 ※ 시설 설치비(CCTV, 도색, 표지판 등) 도비 50%(최대 5천만원) 지원	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(‘18.11.13)	교통국 (교통정책과)

제 목	총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새경기 준공영제 도입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버스 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 입찰제 시범사업 시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설노선, 기존반납노선 10~20개 노선 대상 - 선정된 노선별 입찰 공모를 통해 버스 운영 사업자 선정 및 협약 	노선입찰제 시범사업 시행 협약 (‘19. 하반기)	교통국 (공공버스과)

5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(안전,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닥터헬기 도입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4시간 상시운영 닥터헬기 도입·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영기관 : 아주대병원(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) - 닥터헬기 기능 : 헬기 내 응급처치 및 가벼운 수술 가능, 각종 구조장비 탑재 등 ※ 운영시기 : '19년 상반기 예정 	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	보건복지국 (보건정책과)
승강기 제조·수입업의 등록 및 승강기 설치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시·도지사에게 등록 -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행안부장관에게 신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승강기 제조·수입업의 등록주요 변경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뿐만 아니라,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도 시·도지사에게 등록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- 승강기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관할 시·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 	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1항, 제11조, 제27조 ('19. 3.28.)	안전관리실 (안전기획과)
영업주 변경신고 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변경 시 허가청은 변경신고 수리 전에 변경된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 	「다중이용업소법」 제7조의2 ('19. 4.17.) ※ '18.10.16. 공포	소방재난본부 (재난예방과)
건축허가등 업무처리 시 내부구조 설계도면 제출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허가등의 동의, 신고를 수리한 경우 허가청은 관할 소방서에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 	「소방시설법」 제7조제3항 ('19.10.17.) ※ '18.10.16. 공포	소방재난본부 (재난예방과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상구등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 소방서에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,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	「소방시설법」 제47조의3제2항 (‘19. 4. 17.) ※ ‘18.10.16. 공포	소방재난본부 (재난예방과)
통합문화이용권 (문화누리카드) 지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‘문화누리 카드’ 발급 지원 : 연간7만원 (사용처) 문화예술·여행·체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금 인상 : 1인당 연간 7만원 → 8만원 사용처 확대 : 케이블TV(티브로드, CJ헬로비전 등) 분야 	문화체육관광부 지침 (‘19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정책과)
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중앙 정부의 ‘문화가 있는 날 참여’ - 도내 공공문화시설 328개소 참여 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제도마련)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조례 제정 (참여확대) 참여기관 및 관람료 감면 확대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립공연장 및 문예회관 70개소 박물관·미술관 100개소 템플스테이 10개소, 공립야영장 46개소 기존 공연사업 ‘경기도 문화의 날’ 연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술단 기획, 순회공연 ‘문화의 날’ 집중공연 ‘찾아가는 문화활동’, ‘거리로 나온 예술’ 사업 중 ‘문화의 날’ 공연비율 조정으로 분위기 조성 경기도 다양성영화 공공상영 인디스땅스 공연 ‘경기도 문화의 날’ 연계 	경기도 자체계획 (조례제정 추진중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정책과)
각종 대외활동시 수어통역사 동시통역 시행	〈신 규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민에 대외 메시지·정보전달시 수어통역사 배치로 농인 배려정책 시행 및 인식개선, 일자리 창출 도모 각종 행사, 주요정책 발표, 재난정보 알림 등 	경기도 자체계획 (‘19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정책과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道 공무원 수어교육 지원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道 공무원(시·군 포함) 대상 무료 수어강좌 지원 - 신청/장소 : '19년 1월~ / 경기도 수어교육원 ☎ 1577-8690 - 지원내용 : 상시학습 인정, 수강료(교재비 포함) 지원 	경기도 자체계획 (‘19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정책과)
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활동 지원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활동 지원 - 사업기간 : 2019.1.~12. - 사업대상 : 경기문화재단 대행 - 사업내용 : 예술인권익보호 및 창작활동지원 	예술인복지법,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(‘19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정책과)
공연장 대관료 지원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내 예술단체, 예술인의 공공공연장, 전시장 대관료 지원 - 대관료 부담 완화 및 창작발표 기회 확대 * 지원대상 : 도내 예술단체 + 예술인 * 지원규모 : 1회당 최대 400만원(부대시설 사용료 포함) 	문화예술진흥법, 경기도문화예술진흥 조례 (‘19. 2월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정책과)
경기문화사랑방 및 경기공공예술 창작소 조성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휴시설 및 폐공간 활용 주민 문화활동 공간 및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- 소규모 유휴공간 → 재생(리모델링) → 문화공간 - 각 2개소 조성 - 예술인 창작기반 마련 및 지역 주민 문화예술 향유 확대, 지역문화 활성화 	문화예술진흥법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(‘19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정책과)
생활문화지원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생활문화동호회 지원(50개 단체) 생활문화대축제 개최 생활문화소규모 단체 지원(5개 단체) 	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, 경기도 자체계획 (‘19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정책과)
초등스포츠클럽 (시범사업) 추진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문 스포츠강사가 지도하는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도입 - 경기도-경기도교육청-24시·군이 협력하여 초등학교 5학년 대상 클럽 개설 - 교육과정 내(동아리 시간, 체육시간), 방과후 과정으로 스포츠클럽 운영 - 연간 26시간, 학교체육시설 및 공공, 민간 체육시설에서 활동 	경기도체육진흥조례 (‘19. 1. 1.)	문화체육관광국 (체육과)

제 목	종 전 내 용	달라지는 내용	근 거 (시행일)	해당실국 (부서명)
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인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- 지원대상 : 저소득층 장애 청소년 및 성인 장애인 일부 (만12세~23세) - 지원내용 : 매월 8만원/1인당, 6개월 지원 	국민체육진흥법 (‘19. 6월)	문화체육관광국 (체육과)
문화재 “경미한 현상변경 행위”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미한 보수까지 도지사가 허가하고 있어 허가처리에 장기간(4주 이상) 소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미한 현상변경(문화재 보수) 허가사무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허가절차 간소화 및 허가처리기간 단축(2주 이상) * (예시) 기존 초가지붕 이영잇기, 표석·안내판·경고판 등을 신설하는 행위 등 14개 행위 	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(‘18.10.12.)	문화체육관광국 (문화유산과)
경기문화창조허브 신규 조성 및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경기문화창조허브」는 콘텐츠 창업플랫폼으로써 판교, 광고, 의정부, 시흥, 고양 5개소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내 콘텐츠 창작·창업 생태계 확대 구축을 통한 창업지원, 일자리창출 혁신거점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- 신규 1개소 시·군 공모를 통한 선정 추진(기존 5개소 → 6개소) 사업기간 : 2019년~2021년(3년간 지원 후 시·군 인계 조건) 	경기도 자체계획 (‘19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콘텐츠산업과)
경기관광축제 지원방식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기관광축제 15개 시·군 지원 (문화관광축제 포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기관광축제 31개 시·군 지원(‘19년 축제 지원방식 개선 및 확대) - 경기관광대표축제 15개(문화관광축제 포함) - 경기관광유망축제 16개 	경기도 자체계획 (‘18.10월)	문화체육관광국 (관광과)
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	<신 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광지 장애물 없는 환경개선(시군 관광지 대상) 및 이동권 확보(투어버스 운영) 관광정보체계 구축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 - 읽기 쉬운 픽토그램 안내표지판 등 설치(임진각관광지), 보행가능지도 제작 -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등 업계종사자 및 문화관광해설사 대상 무장애 관광서비스·인식개선 교육 실시 	경기도 자체계획 (‘19. 1월)	문화체육관광국 (관광과)